##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3. 1. 6.>

##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 •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소방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교육공무원 제외)		공무원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대장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				1,150,000원
신본부장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950,000원
		소방총감		
	소장	*1 (1 =1 =1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장학관 • 교육연구관(1	,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		소방정감	급 상당 직위, 고위공	
급 외무공무원			무원단 가등급 직위)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대령	치안감,	장학관 · 교육연구관	650,000원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소방감	(2급 상당 직위, 고위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			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급 외무공무원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중령	경무관,	단과대학장, 장학관・	500,000원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소방준감	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	
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			등급 직위 중 비고 제	
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			5호에서 규정한 직위)	
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소령	총경,	학과장(학장보), 교장	400,000원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방정	·원장, 장학관·교육	
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연구관(4급 상당 직위)	
(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				
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	대위	경정,	전문대학 학과장, 교	250,000원
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소방령	감・원감, 장학관・교	
(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			육연구관	
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				

군, 전문관				
	준위			200,000원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4등	원사	경감 •	장학사, 교육연구사	185,000원
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경위,		
(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		소방경·		
무경력관 나군		소방위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	상사	경사,		180,000원
문임기제공무원(라급)		소방장		
8·9급(상당), 1·2등급 외무공	중위,	경장 •		175,000원
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	소위,	순경,		
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중사	소방교·		
다군		소방사		
	하사			165,000원

비元

-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하다.
-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 2) 6급 이하: 월 200,000원
  - 다. 시・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라. 시 · 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 1) 소방정·소방령: 월 200,000원
    -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2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	1 7 01	경찰 ·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	--------	---------------	-------	-------

외)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 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 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 위)	· ·	·경무관, 소방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 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4·5급(상당), 연구관·지 도관(4·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 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 원(가급·나급), 국가정보 원 전문관(4·5급 상당 직 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 문군무경력관 가군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6·7급(상당), 연구사·지 도사, 3·4등급 외무공무 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